

# 풍수재보험에 관심가져야



이철민  
(본 협회 감사실장)

## 1. 풍수재보험의 발원

풍수재보험(Windstorm & Flood)을 알기 위해 보험이란 어떤 것이며, 보험의 역사는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하였는지 더듬어 보기로 한다.

보험은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어 경제적인 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연한 일로 개인의 생활도구 또는 생산에 필요한 시설물 등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경제적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생활집단의 구성원들이 금융적 수단에 의해 보상할 수 있도록 만든 경제적 제도이다.

이같은 제도는 14세기경 이태리 지방에서 시작하였으며 오늘과 같이 보험이 독립사업으로 확립되기는 18세기 영국에서 이루어졌다.

19세기 후반에 들어 보험은 급진적으로 발전해 금세기에 이르러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험에 의해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풍수재보험도 산업발전에 의한 것으로 19세기 중기 이후 구미에서 시작, 국가에 따라 풍해보험 또는 수재보험 등으로 달리 부르며 담보 범위도 약간씩 상이하였다.

이는 산업혁명 이후 도시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공업도시가 발달함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가지 재해 중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해 인명뿐만 아니라 산업생산시설의 손실이 경제적인 많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즉, 도시개발에 수반되는 재해중 수재는 산업시설 뿐만 아니라 생산시설도 파괴해 기업이 도산되고 이로인한 실직 등으로 국가경제가 어렵게 되자 이러한 손해를 금융적 방법에 의해 신속히 보상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 풍수해보험의 과정이라 생각된다.

## 2. 초기 국내 풍수재보험

풍수재보험이 국내에서 언제 시작되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이웃 일본의 경우를 보면 1937년 12월 대장성에 풍수재보험을 인가하였으며 구미의 경우 처럼 독립종목이 아닌 화재보험에 부가하여 풍수재를 담당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국내 풍수재보험은 그 이후에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풍수재보험이 실시된 것은 1960년대 이후 국가

산업정책에 따라 중화학공장의 건설과 수출정책에 의해 각종 산업 생산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많은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러한 손해발생을 화재보험 단일종목으로는 보상이 불가능하므로 전보험을 보상 가능한 동산종합보험(Moral All Risk Insurance)을 이용했다.

이 보험의 보상범위를 소개하면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도난, 항공기의 낙하물 및 차량의 충돌, 노동쟁의, 소요, 누수, 우담수유(雨淡水瀦), 연해(煙害), 설해 등이며 특약에 의해 추가확장부담으로 풍수재 손해까지 부담하는 보험이다.

이처럼 동산종합보험이 제반 위험을 담보함에 따라 보험료도 각각의 위험을 종합한 것같이 각 위험의 요율을 합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대단히 높아서 피보험자의 경제적 부담도 컸으며 부담의 범위가 넓은 만큼 손해발생시 보상에 따른 분쟁도 있었다.

또 잡다한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피보험자는 풍수재위험을 보상받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 위험에 대한 보험료 까지 부담하게 되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피보험자들은 보험료 부담이 적고 위험을 선택할 수 있는 풍수재보험을 요구하게 되었다. 당시 풍수재보험은 국내 약관이 아니라 외국약관이어서 사용상 여러가지 제약을 받았으며 이러한 제약을 벗어나기 위해 국문

약관 즉「풍수재부담 특별약관」을 사용하였으며 처음부터 화재보험보통약관에 부가하여 사용함으로써 화재위험과 풍수재위험을 하나의 증권으로 담보하도록 하였다.

### 3. 풍수재의 부담범위

이 보험의 약관을「풍수재부담 특별약관」이라 하며 담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가. 보험의 목적물

건물, 공작물, 기계, 상품, 가재도구 및 동산 등에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

#### 나. 보상하는 범위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우, 고조(高潮), 해일, 범람 및 홍수 등으로 인한 손해

이 보험은 보험의 목적물이 입은 손해가 수재 또는 풍재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보상이 가능하다. 이외에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

이상과 같이 풍수재보험은「동산 종합보험」의 잡다한 위험을 제외하고 순수한 풍수재를 기본으로 한 위험만을 담보함으로써 피보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는 등 피보험자에게 유익한 보험이며 우리 생활에 필요한 보험이다.

#### 다.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은 재해

「우연하지 않으면 보험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이 보험 사고는 우연한 상황을 예측하도록 한 것인데 우연을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거나 동시에 위험이 확산되거나 또는 직접적인 재해가 아닌 간접적인 재해는 보험자가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면책하고 있다.

첫째, 풍수재 발생시 보험의 목적물이 분실 또는 도난되어 생긴 손해.

둘째, 원인의 직간접에 관계없이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이상의 손해는 특별약관에 의해 보험료의 추가부담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셋째, 풍재 또는 수재에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넷째,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먼지가 들어감으로써 생긴 손해. 예를 들면, 건물의 개구부 등과 같은 곳을 통해 건물내에 들어와 수용된 동산 또는 건물에 입힌 손해와 계절풍에 의한 황사로 인한 손해. 그러나 건물이 풍재 또는 수재로 직접 입은 손해는 보상한다.

다섯째, 추위, 서리, 얼음, 눈으로 생긴 손해.

여섯째, 풍재의 직간접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물인 네온사인 장치에 전기적으로 생긴 손해 및 전선, 전구의 필라멘트만에 생긴 손해.

이상은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이다.

### 4. 풍수재보험과 특수건물

앞에서 열거한 바와같이 풍수재보험에 가입하려면 특수건물이 아닌 일반건물의 경우는 화재보험 가입시에「풍수재위험부담 특별약관」을 적용해야만 화재와 풍수재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는 화재보험료와 풍수재보험료를 함께 납입해야 보험자가 보상의 책임을 갖는다. 그러나 특수건물의 경우 특별법「법률 제2482호」에 의해 보험가입 의무가 주어진 동건물은「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한 특수건물은 풍수재재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특수건물은 보험계약 체결시 또는 계약갱신시 마다 화재예방 및 소화설비의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였다. 이는 국가 사회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토록한 배상책임보험으로서 ① 자동차손해배상보험 ② 산업재해보상보험 ③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의 3가지 의무보험중의 하나이다.

이처럼 특수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따라 특수건물 소유주는 화재예방에 관한 관심이 고취되었고 우리협회의 계속적이고도 성실한 지도로 특수건물의 화재예방과 소화설비는 점차 개량 보수되었고 화재발생률이 크게 감소하였다. 그 결과 특수건물에 대해 보다

많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보험료의 추가부담없이 담보범위를 확대하여 풍수재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였다.

다시말해 화재보험기본료로 풍수재위험부담 특별약관을 적용해 피보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켰다.

특히 이기회에 부연코자 하는 것은 특수건물에 한해 소화설비를 개량하고자하나 자금 부족으로 소화설비를 개량하지 못하는 특수건물 소유주께서는 우리 협회의 소화설비개량자금을 500만원이상 1억원이하 규모로 대여받을 수 있으므로 소화설비가 미비하거나 개량이 필요한 특수건물은 우리 협회의 개량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리라 믿어진다.

### 5. 특수건물의 풍수재 보상 현황

우리나라는 입지적으로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 여름과 가을을 통해 태평양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태풍으로 매년 재산상의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물론 일차적으로는 풍수재를 방어하기 위해 토목공사와 같은 것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이차적으로 보험을 통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한 예로 1977년 경인지방의 집중호우로 안양천이 범람하였으며 주변 공장 약 3백여업체(특수건물



특수건물의 풍수재 보상 현황

년도별	건수	지급보험료
'84	102	1,670,029,000
'85	131	223,263,000
'86	136	332,933,000
'87	756	10,754,186,000
'89	280	3,549,971,000

(註)•'87 태풍 셀마·다이아나 및 호우(경인지방)

- '89 태풍 루디 영남지방 호우 낙동강 범람
- 부산 사상공단 전공장 수침됨

및 일반건물 포함)가 침수되어 피해액도 약 2백60억원으로 추산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풍수재보험에 가입된 공장의 수는 극히 적었던 것으로 신문지상에 보도되었다. 당시의 특수건물은 일반건물과 같이 피보험자의 요청에 의해서만 담보가 가능하였던 것도 한 원인이었다.

그후 10년 후인 1987년 7월, 같은 지역이 침수되었는데 특수건물 7백여건이 손해액 약 1백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모두 보상받았다. 이처럼 많은 특수건물이 보상받

을 수 있었던 것은 앞서 언급한 것 같이 특수건물의 위험부담 범위를 확장하였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요청이나 보험료의 추가 부담없이 특수건물 보험에 가입하면 보상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상 수재현황을 본 바와 같이 보상 피해액도 점차 늘고있다. 우리는 치산치수가 국가 백년대계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 치산과 치수를 잘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를 인재라고 부르며 우리의 생활이 향상될수록 우리의 잘못으로 많은 인재를 부르기도 한다.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는 이같은 각종 재해를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방재시험소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로는 그 활동이 미약한 듯하나 부단한 노력으로 흡족한 결실을 맺을 것을 확신한다. 그러기 위해서 방재시험소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 많은 지지와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 ☺